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2026. 3. 26

주 식 회 사 광 주 신 세 계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
②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, 제 542 조의 6 제 1 항,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

> (관련조문) 상법 제 393 조의 2 제 1 항
> 상법 제 542 조의 8 제 5 항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
> (관련조문) 상법 제 393 조의 2 제 3 항
> 상법 제 542 조의 8 제 4 항

제 5 조 (위원장)

① 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(위원회에서 정한 위원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(1 주간)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

송 ·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1. 독립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(1 주일)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간사)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(인사부장)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5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규정명 변경 및 제 1 조 및 제 3 조, 제 4 조, 제 9 조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